

# '23년 결산 결과 '자본잠식' 공시에 대한 안내 말씀

- 사업장 처리방안 손실 반영으로 워크아웃 기업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과정
- 워크아웃과 공사현장은 전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진행
- PF 없는 사업 등은 견실, 4월 기업개선계획 통해 자본확충 및 조속한 경영정상화

태영건설은 3/13(수) '23년 사업연도 결산' 자료를 공시하였습니다.

연결재무제표 '23년 기말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5,626억 원이 되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자본이 마이너스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워크아웃 상황과 맞물린 불가피한 과정으로 과거 워크아웃 기업들도 통상적으로 거쳤던 일입니다.

**우선, 직접 채무는 아니지만 그동안 우발채무로 분류되어왔던 PF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를 주채무화 하였습니다.**

**또한, 태영건설 전체 자산에 대한 자산성 검토 결과와 향후 수년간에 걸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PF사업장들의 예상되는 추가 손실에 대한 총당부채 예측분과 결손을 모두 한꺼번에 선반영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PF사업장의 우발채무는 대주단 등 이해관계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장별 정상화방안을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이번 결산 결과보다 줄어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본잠식이 발생하면 주식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제40조)에 따라 매매 거래가 즉시 정지됩니다. 이번 자본잠식으로 태영건설의 주식도 매매 거래가 정지되며, 3월 중으로 '23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최종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는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상장폐지 사유 통보를 받게 되면 절차상 거래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의를 통해 최대 1년 동안의 개선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개선계획을 이행하고 개선 기간 종료 후 거래소가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계획 이행 여부를 심사하여 상장유지 혹은 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같은 거래소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주식 매매거래는 정지되며, 상장유지가 결정될 경우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고 거래가 재개됩니다.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면, 위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과 상장폐지 사유 해소계획을 포함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 개선 기간을 부여 받고 개선계획 이행을 통해 상장폐지를 해소하는 과정을 거칠 계획입니다.**

현재 태영건설은 관급공사 및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진행 중인 워크아웃과 공사현장에는 전혀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업개선계획이 신속하게 수립되어 출자전환 등을 통한 자본확충으로 조속히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워크아웃을 신속히 졸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